

<h1>보도자료</h1> <p>2024. 6. 24.</p>		<h2>양형위원회</h2>
	문의	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02-3480-1924)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사기범죄와 양형』 개최

■ 개요

-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2024. 6. 24. (월) 14:30,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기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12차 심포지엄을 개최함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 및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 6. 24. (월) 14:30~18:00
- 장소: 대법원 1층 대강당

■ 제1세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 발표 및 토론내용

- 사회: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연구회 상근부회장)

① 정성민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발표 요지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심리나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양형실무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의 실무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함

○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황

- 최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만 건 전후의 형사 판결이 선고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고 있음. 종래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으로 향후 동법이 적용되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함

○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인데,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 등의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범죄수익의 다과(多寡)를 고려하는 세부적 양형인자의 마련이 필요함
-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위 조직원이라도 합의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중위 조직원인 유인책(콜센터)부터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총책은 징역 20년이 선고되기도 함

○ 일본의 보이스피싱 범죄(특수사기)

- 일본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처벌규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함. 특히 하위 조직원의 처벌 비율이 높고, 실형 비율도 높으며 상위 조직원으로 갈수록 중하게 처벌하는 등 양형실무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모습임

② 권경선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정토론 요지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금수거책의 역할, 범행의 인식 내용 등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자체가 문제됨. 실무상 사기방조죄만 인정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확인됨. 나아가 현금수거책에 대한 공동정범의 인정범위도 문제됨
- 현금수거책의 수거금액은 취득이득과 비례하지 않고, 그 다과는 현금수거책의 의사나 행위와 관계없는 우연에 불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수거금액의 다과에 따라 형량범위에 큰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경우에 따라 유인책(콜센터)이 현금수거책과 비슷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현금수거책의 경우

행위태양과 범행수법을 유형 분류에 고려하거나 특별양형인자를 조정하는 등 **담당한 역할**에 부합하는 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③ 박종호 검사(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지정토론 요지

- 리딩방 사기, 투자금 손실보상 사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 및 수사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함
-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은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단순가담'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담정도에 대한 특별양형인자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실무상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양형상 감경요소로 삼거나, 현금수거책 등의 미필적 고의를 쉽게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범의의 판단과 양형요소로 고려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④ 이기수 교수(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의 지정토론 요지

- 최근 5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감소하면서 검거율은 올라간 반면 사기범죄의 발생건수는 2021년 294,075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2%가 증가하고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짐.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에 필요한 위하효과(威嚇效果)가 약한 것으로 생각되고, 2023년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형을 상향한 것은 타당함
- 피해자가 높은 수익을 추구하였다고 하여 범죄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범죄자가 단순가담을 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스스로 합류한 것이고 범죄의 인식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감경요소로 삼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군을 별도의 양형기준으로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과 중첩되거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 제2세션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발표 및 토론내용

○ 사회: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① 박찬걸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 요지

○ 조직적 사기범죄에 실제 적용되는 개별 양형인자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양형 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

○ 조직적 사기범죄의 개별 양형인자

-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보다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더 많으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여 가중인자와 감경인자 수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소극 가담과 이중으로 양형인자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신미약이나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양형인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의 정의규정이 없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정하여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사법신뢰에 있어 바람직
 - 처벌불원에 있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 피해자가 영업이 정상화되어야 이미 지급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한 반면 피해자의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전자의 사정은 무시하고 후자의 사정만으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함
-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에 대한 개선방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데, 기존 유형분류에 포함하되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방안이 적절함

- 조직적 사기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피고인이 다수의 인적 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족함
-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에서의 이득액 산정은 양형요소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을 양형기준의 잣대로 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피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특별가중·감경인자 수의 균형상 불합리하고 일반적 감경인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즉 조직적 사기를 위하여 결성된 단체 또는 집단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예비·음모 단계에 대한 처벌 및 범죄수익의 몰수·추징도 가능할 수 있음

② 정현기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지정토론 요지

- 단순가담은 객관적 기여의 정도에 따른 구분, 소극가담은 주관적 의욕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생각되나, 보다 더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될 필요는 있음. 피고인이 단순 가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범행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었다면, 그 역할만을 별도로 평가하여 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미활용 양형인자를 삭제하고 새로운 양형인자를 발굴할 필요는 있으나 양형기준상 가중, 감경인자 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조직적 사기에서는 피해자로부터의 편취금이 조직원 전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진지성, 상당성 등 질적 개념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추출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재판지연을 야기할 수 있음. 한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조직적 사기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것은 이중평가가 될 우려가 있음

③ 전세정 부부장검사(수원지방검찰청)의 지정토론 요지

- ‘경합범 규정의 개정’ 또는 ‘조직적 사기의 경우 동종 사기범행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즉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형법상 단순 사기죄로 의율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의

한계로 선고형이 과경하여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음

- 대규모 사기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이 일반적인 법감정에 맞게 상향되어야 하고,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액 기준의 소유형의 세분화도 필요함
-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이 유형화되어 있는 경우 행위가 담 유형 관련 가중 및 감경인자를 어떠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해설로 부기하거나 '단순 가담'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개선하여 양형의 통일성, 균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단순 가담' 감경요소의 적용 자체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4 구길모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정토론 요지

- 조직적 사기 중 중대 사건에 해당되는 제3 내지 5유형에서의 양형기준 준수비율이 낮게 나타남.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형량범위를 낮추거나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별개의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특별 감경인자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해 선고형이 과소하게 나타나고, 오히려 형사법은 범죄인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추구하므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함